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05-28

서 울 행 정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14구합6654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선정당사자)	A
피 고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
변 론 종 결	2014. 8. 13.
판 결 선 고	2014. 10. 17.

주 문

1. 피고가 2012. 12. 10. 원고(선정당사자) A와 선정자 B에 대하여 한 취득세 7,286,230원, 농어촌특별세 728,601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05-28

가. 주식회사 C(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D, 이하 'C'라 한다)는 1999. 11. 15. 섬유·봉제 제조판매 및 수출입업을 주된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2004. 9. 20. 상호를 C로, 목적사업을 무역업등으로 변경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원고와 선정자 B을 합하여 '원고들'이라고 한다) A가 [redacted]구 E 308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소유한 C의 주식 각 3,000주 합계 6,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F과 G으로부터 2010. 12. 6. 양수하였으므로, 선정자 B의 기존주식 4,000주를 포함하면 원고들이 C의 주식 100%를 소유하여 과점주주가 된다는 이유로, 원고들에 대하여 2012. 12. 10. 취득세 7,286,230원, 농어촌특별세 728,610원 합계 8,014,8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3. 2. 22. 조세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4. 1. 7.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그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모두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원고 A는 F, G로부터 명의를 차용하여 이 사건 주식을 2000. 5. 15.부터 소유하여 왔으므로 2010. 12. 6.에서야 이 사건 주식을 양수받아 과점주주가 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05-28

3.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4.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 A는 C의 이사로 등기되어 있고, 선정자 B은 원고 A의 남편 H의 동생이다.

2) 원고 A의 남편 H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은 J과의 사이에 서울남부지방법원 2004가합10641 차용금반환등 소송에서 미화 30,125.15달러를 지급받는 판결을 선고받았는데, 그 판결문에는 다음과 같은 기재내용이 있다.

> J은 인도네시아 회사인 [redacted]엠과 손을 잡고, J이 K 이름으로 의류 샘플을 제작하여 외국 바이어들에게 배포하면, 그 중 본주문이 들어오는 의류상품의 원단과 부자재를 K 이름으로 [redacted]엠에 조달하고, [redacted]엠은 위 원단과 부자재를 의류상품으로 생산하여 외국에 수출하는 일을 하고 있었다.
> J은 L과 위와 같은 일을 본격적으로 하기 위하여 1999. 11. 15. D를 설립하였으나, J이 자금력이 부족하여 [redacted]엠에게 원단과 부자재를 조달할 능력이 부족하자, J과 L은 주식회사 I에게 위 D의 주식과 경영권을 양도하기로 하고, J은 주식회사 I의 인도네시아 지사장으로 일하기로 하였다. 이에 L과 주식회사 I은 2000. 1. 9. D와 [redacted]엠의 운영에 관한 협약서를 작성하면서, "J이 K의 이름으로 제작하여 이미 외국 바이어들에게 배포한 의류 샘플들 중 본주문으로 연결되는 것이 있으면, J 측에 5%를 지급한다"고 약정하였다.

3) 한편, C의 주주였던 F, G은 "1987년 주식회사 I 설립 당시에 창업 직원으로 근무하였고, H과 친구 사이이다. H이 C의 명목상 지분 분산이 필요하다고 요청하여 자신들의 명의를 대여하였다. 2009년경 원고 A가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다 업무를 중단하기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05-28

로 하여, 추후 어떤 불이익이 있을지 모르기에 명의를 이 사건 주식의 실질적 소유자인 원고 A 앞으로 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4) 원고 A는 C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M이라는 상호로 사업자 명의를 취득한 후 프랜차이즈 사업을 영위하여 왔다.

5) 한편, H이 대표이사로 있는 I의 주주현황은 1987. 1월 설립된 이래로 현재까지 다음과 같은데, 실질적으로는 H이 I의 발행주식을 모두 소유하고 있다. 2000. 5. 15. 41,000,000원이 I의 계좌에서 출금되었다.

주주	주식수	지분율(%)
N	4,000주	6.67
O	2,000주	4.67
F	2,000주	3.33
P	3,800주	6.33
H	45,000주	75
원고 B	2,000주	3.33
Q	200주	0.67
주식총수	60,000주	

5) 한편, C의 2000년, 2001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는 원고 B이 4,000주, G, F이 각 3,000주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G, F은 2010. 12. 6. 원고 앞으로 이 사건 주식의 명의를 변경하였다.

【인정근거】 앞서 채택한 증거들, 갑 제3 내지 7호증, 갑 제 10호증, 을 제4, 6호증의 각 기재

나. 판단

1) 구 지방세법(2010. 12. 27. 법률 제104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지방세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05-28

법'이라 한다) 제105조 제6항은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인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지방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1조는 법인의 과점주주는 "구 지방세기본법(2010. 12. 27. 법률 제10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지방세기본법'이라 한다) 제47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를 의미한다"고, 지방세기본법 제47조 제2호는 과점주주에 관하여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 그 밖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라고 각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구 지방세기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4조는 "배우자" 또는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개인인 경우에는 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및 그와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수의 합계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이상인 법인"등을 특수관계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위 관련규정들에 의하면 법인세법상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특수관계에 있는 100분의 51 이상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05-28

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등 참조).

3)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F과 G은 C 주식의 명의수탁자였음을 자인하고 있는 점, ② F, G이 주식을 취득할 무렵 I은 J으로부터 C의 주식을 인수하기로 하였고, 그 무렵 I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의 매수대금으로 보이는 41,000,000원이 인출된 점, ③ 원고 A는 C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면서 프랜차이즈 사업을 영위하는 등 C를 실질적으로 경영하여 왔던 점, ④ F, G은 I에서 일한 전력이 있을 뿐 C와는 아무런 연고도 없고 원고 A가 F, G에게 이 사건 주식의 매수자금을 지급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⑤ I의 대표이사 및 주주는 원고 A의 남편 H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A는 2000. 5.경 F, G 명의로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위 주식을 F, G에게 신탁한 자가 I 또는 H 개인이었다고 하더라도 그들은 모두 특수관계인에게 해당하여 그 명의신탁 당시 이미 과점주주가 되었음은 마찬가지이다), 원고 A가 2010. 12. 6.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5. 결 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05-28

재판장 판사 김병수

판사 김재령

판사 김태균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05-28

선 정 자 목 록

1. A

2. B　끝.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05-28

관 계 법 령

■ 구 지방세법(2010. 12. 17. 법률 제104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납세의무자등)

⑥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인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과점주주의 취득 등)

① 법인의 과점주주(「지방세기본법」 제47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하거나 증자 등으로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해당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등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

②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여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총액에 대한 과점주주가 가진 주식등의 비율(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의 비율"이라 한다)이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분을 취득으로 보아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증가된 후의 주식등의 비율이 그 증가된 날을 기준으로 그 이전 5년 이내에 해당 과점주주가 가지고 있던 주식등의 최고비율보다 증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 과점주주였으나 주식등의 양도, 해당 법인의 증자 등으로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가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여 다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다시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주식등의 비율이 그 이전에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주식등의 비율보다 증가된경우에만 그 증가분만을 취득으로 보아 제2항의 예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

④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과점주주의 취득세 과세자료를 확인한 시장·군수는 그 과점주주에게 과세할 과세물건이 다른 시·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시·군"이라 한다)에 있을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05-28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과세물건을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과점주주의 주식등의 비율, 과세물건, 가격명세 및 그 밖에 취득세 부과에 필요한 자료를 통보하여야 한다.

■ 구 지방세기본법(2010. 12. 27. 법률 제10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제1호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에 있어서는 납기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 그 밖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나.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그 밖에 그 명칭과 관계없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 존속·비속

■ 구 지방세기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친족, 그 밖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47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 그 밖의 특수관계에 있는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05-28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결혼한 여성인 경우에는 제9호부터 제13호까지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남편과의 관계에 따른다.

1.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2. 3촌 이내의 부계혈족인 여자의 남편 및 자녀
3. 3촌 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녀
4. 처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5.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6. 입양자의 생가(생가)의 직계존속
7. 출양자 및 그 배우자와 출양자의 양가(양가)의 직계비속
8. 혼인 외의 출생자의 생모
9. 사용인 또는 그 밖에 고용관계에 있는 자
10.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과 생계를 함께하는 사람
11.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개인인 경우에는 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및 그와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수 또는 출자액(이하 "소유주식수등"이라 한다)의 합계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
1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법인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개인

가. 해당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소유주식수등이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정부가 주주인 경우에는 정부는 제외한다)

나. 소유주식수등이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정부가 주주인 경우에는 정부는 제외한다) 또는 개인

13.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및 그와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사람이 이사의 과반수이거나 그들 중 1명이 설립자인 비영리법인. 다만, 그들이 해당 비영리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20 이상을 소유하거나 출자한 경우만 해당한다.